

제 안 요 청 서

(연구개발 사업)

1. 사업개요

- 가. 운용요구서 주요내용, 체계구성도, 작전운용요구능력, 기술적·부수적 성능, 핵심기술요소 등
- 나. 사업추진 주요일정
- 다. 체계운용 환경 및 여건
- 라. 전력화지원요소 관련사항: 개발범위, 방법[필요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 내용], 부품단종관리 방안(체계개발업체와 양산업체가 다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체계개발결과 확정된 부품단종관리 계획서 공개 가능) 등
- 마. 시험평가 관련 사항(적정 시제수량 확보계획 포함)
- 바. M&S 활용계획(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)
- 사. 상호운용성 확보계획
- 아.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 또는 핵심기술
- 자.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양산단가 목표, 계획 양산 비용 및 수량
- 차. 시제품 활용 방안, 기술자료 지원범위 등

2. 업체 선정 기준

- 가. 개발계획
- 나. 기술확보 현황 등에 관한 개발능력
- 다.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비용평가
- 라. 중소기업·중견기업 참여 가산점 등
- 마. 투자분담률
- 바. 제안서 오류 시 검증에 관한 사항
- 사. 전력화시기 지연업체의 제재방안에 관한 사항
- 아. 양산단가 목표 달성여부 (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)
- 자. 그 밖에 업체 선정 시 고려할 사항

3.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내용

- 가. 제안서 요약

- 나. 개발계획: 무기체계, 부체계 및 구성품 개발계획, RAM 목표값 설정 · 할당 · 검증방안, 국산화(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)/수출계획, M&S활용계획(가상함정 등 포함), 상호운용성 확보계획, 통합체계지원 등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및 시험평가계획(국과연 시험장 활용 포함),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, 소프트웨어 기능 및 개발계획(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 등), 규격 및 목록화 계획, 일정 · 비용 · 품질 관리계획 및 위험 관리계획(안전사고 예방대책 포함. 단, 탐색개발단계는 필요 시 적용), 무기체계 요구성능에 대한 초과 제안사항 및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(초과 · 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비용분석 자료 별도 첨부) 등
- 다. 개발능력: 부체계 또는 구성품별 핵심기술요소를 포함한 적용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, 기술관리계획, 연구인력(규격, IPS 전문인력 포함), 장비 및 시설보유현황, 경영상태 및 보안상태, 협력업체 관리방안 등
- 라. 투자계획
- 마. 비용: 연구개발비(소프트웨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한다), 양산비, 운영유지비
- 바.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: 연동장비, 정비계획[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 계획], 보급지원, 지원장비(시험 및 정밀측정장비 등), 부품단종관리 계획 등
- 사. 양산단가 목표 달성방안 및 최대 양산단가 (복수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)
- 아. 필요 시 사업성과관리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요구사항 등
- 자. 시제품 활용 방안(탐색개발 결과 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부품 단위별 활용계획)
- 차.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및 관련정책 등 정보 제공, 사업담당공무원에 대한 입찰업체 소개 · 홍보 및 사업 관련 설명 · 정보수집 등 대관 업무, 입찰 전략 컨설팅, 입찰 대행 등 해당 입찰에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(대리인 · 자문 · 고문 · 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) 현황
- 카. 「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6조,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만족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추천
- 타. 관급/도급 품목 분류(추가 관급 제안 품목이 없을 경우 제외)
- 파. 주요 도급장비 획득계획(사내 하도급품목(업체) 선정절차 포함)
- 하. 무기체계 개발간 병행할 타당성이 있는 부품 국산화 품목의 추천
 - * 추천된 품목은 부품 국산화 사업으로 추진 검토
- 거. 타.목에 해당하는 국산화 추진시 체계적합성 확인 및 시험평가 등 지원계획

(청이 제안요청한 국산화 병행 추진 필요 품목을 포함한다)

너. 그 밖에 무기체계별 필요한 사항 등

제안요청서

(구매사업)

1. 다음 각 목의 소요무기체계 내용

- 가. 무기체계명 및 체계개요
- 나. 주요작전운용성능
- 다. 개략적인 소요량이 포함된 체계운용개념
- 라. 정비지원, 지원장비(시험 및 정밀측정장비 등), 보급지원, 기술자료, 군수관리 전산자료 및 교육소요 등에 관한 통합체계지원 사항
- 마. 세부적인 요구성능조건

2. 업체에 제공할 다음 각 목의 내용

- 가.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일정
- 나. 시험평가 일정 및 방법
- 다. 체계운영환경 및 여건
- 라. 계약일반조건
- 마. 대상장비 선정 기준·요소·배점 등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과 기준 등
- 바. 대상장비 선정을 위한 필수조건·선택조건의 구분과 선택조건 충족비율
- 사. 절충교역 방침 및 협상방안
- 아.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·부수적 성능 및 운용개념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능요구 사항
- 자. 상호운용성 확보계획
- 차. 전력화지원요소: 부품단종관리 계획,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계획
- 카. 기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

3.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다음 각 목의 내용

- 가. 제안서 요약
- 나. 개요: 제안체계 및 모델명, 체계운용개념 및 제한사항, 체계성능 입증방법, 인도가능시기 및 물량, 제안체계개발간 M&S활용 검증활동 및 실적(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), 제안체계 수출 및 생산실적
- 다. 통합체계지원: 개념[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을 포함한 정비지원, 지원장비소요, 보급지원], IPS 12대 지원요소, 보증조건, 동시조달수리부속

- 산정기준 및 목록, 목록화 계획, 램(RAM) 및 체계지원 분석자료 등 개발자료, 필요한 해당국가의 야전운용자료와 기술·검증자료, 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창정비용 표준자재목록 및 자재관리프로그램, 지원 및 부수장비 자료, 기본불출품목 자료, 국외구매의 경우 해당국의 연간 장비운영유지비 자료, 정비지원시설 개략 배치도 및 시설요구조건, 하자보증 및 사후 관리계획, 보급목록 및 정비관리제원, 통합체계지원 관련자료 (정비할당표, 부대 및 야전정비 기술교범, 체계지원분석 자료, 지원장비 목록, 동시조달 수리부속 목록, 규정휴대량 목록 및 인가저장목록, 교육훈련 및 교보재 자료, 해당국에서 공인한 통합체계지원 시험평가결과보고서, 목록화 계획, 필요 시 창정비용 표준자재목록 및 자재관리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기타 운영유지 자료) 등
- 라. 전력화 이후 후속군수지원 방안 : 수명주기비용 및 관련 자료, 연간 운영유지비(필요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시 비용 포함)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(부품 단종관리계획 포함)
- 마. 가격 및 인도조건: 총괄가격, 업무분할구조에 따라 식별정보(재고번호)가 명시된 품목별 제안가격, 기능적비용, 비반복 발생비용 및 공제여부, 수명주기비용, 비용절감을 위한 대안 제시 및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시의 제안가격 단, 제안가격은 인도조건에 따른 가격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되, 화약류(폭발물)는 도착지인도조건(DAP/DAT)을 우선 적용
- 바. 기술이전: 기술이전의 범위(이전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핵심기술의 내용, M&S활용 검증활동 검증기술 및 모델, 핵심기술의 제공보증, 로열티 및 특허의 사용조건), 기술이전 일정 및 조치계획, 이전자 및 전수자의 권리와 의무, 기술사용료의 지급조건, 국내방산 및 기술수준 축적에 미치는 영향, 수출가능성 및 국내업체 참여조건
- 사. 절충교역: 제안내역(구분, 유형, 제안내용, 금액), 세부제안내역, 가치 및 비율, 이행기간
- 아. 시험평가 지원: 성능입증방법 제안, 시험평가용 장비 소요 및 지원가능 장비, 시험평가 장소, 목적, 기간
- 자. 교육훈련 및 사업관리 계획
- 차.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성능 등에 대한 제안체계의 세부성능 및 규격
- 카. 상호운용성 확보계획
- 타. 회사명, 대표자, 연락처, 소재지, 연혁, 주요실적, 주요 시설 및 보유설비, 신용도 등 업체 일반현황(별도 원제작사 존재 시 원제작사 일반현황을 반드시

- 포함하여 제출), 각종 서약서 등
- 파. 업체에 대한 사업 계획 및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,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입찰업체 소개·홍보 및 사업 관련 설명·정보수집 등 대관 업무, 입찰 전략 컨설팅, 입찰 대행 등 해당 입찰에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(대리인·자문·고문·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) 현황
- 하.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와 무역대리계약서(군수품무역대리업체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포함)
- 거. 국방규격화 및 품질관리계획

4.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

5. 연락 및 문의처, 기타 유의사항

6. 제안서 유효기간

7.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 등